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

심심여수

2021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I 시민옴부즈만 운영개요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003
2.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005
3. 시민옴부즈만 기능 및 권한	007
4. 고충민원 처리절차	009

II 시민옴부즈만 운영성과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013
2. 시민옴부즈만 활동	019
3. 시민옴부즈만 홍보	026

III 주요 처리사례

1. 의견표명(1건)	031
2. 기각(5건)	035
3. 각하(2건)	047

IV 부록

1.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051
2.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059

발 간 사

PREFACE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공감의 마음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독립된 민원 해결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바탕으로 위촉된 제3기 여수시 시민 옴부즈만이 2021년 9월에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시민의 눈높이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소명으로 시민과 공감하기 위해서 권익이 침해된 현장으로 찾아가 시민의 소리를 들으며 위로와 마음을 헤아려 보며 함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 한사람의 민원인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무겁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난 1년 동안의 흔적들을 “2021년 여수시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비록 시민들의 아픔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을 지라도 시민여러분께서 위법·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함을 느낀다면 이를 알리고 호소할 때 조금이나마 그 억울함은 풀어지고 잘못은 바로 잡아질 것입니다. 우리 시민 옴부즈만이 그 역할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극한 관심과 애정 어린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3기 옴부즈만이 정착단계를 지나 그간의 활동 및 운영상황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새롭고 모범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옴부즈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 1.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김 기 채 · 김 양 곤

2021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I. 시민옴부즈만 운영개요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3. 시민옴부즈만 기능 및 권한
4. 고충민원 처리절차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옴부즈만(Ombudsman)이란? |

- 이 단어의 기원은 고대 스웨덴어에서 유래한 말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 · 대표자 · 변호인 · 후견인’ 이라는 뜻으로
- 현재는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을 의미

가 도입배경

-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핀란드 · 프랑스 · 영국 · 호주 등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고충을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게 조사 · 처리하기 위해 1994.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08.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의 자율적 · 자주적 해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를 통해 옴부즈만의 제도화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여수시에서는 위법 ·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에 이바지 하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2016. 12. 30.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 2017. 8. 1.부터 2명의 옴부즈만을 위촉 · 운영중에 있습니다.

나 운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6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다 추진경과

- 2016. 10. 05.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
- 2016. 12. 30.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2017. 04. 07.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17. 08. 01. 제1기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출범
- 2018. 02. 13. 2017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19. 02. 12.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19. 08. 01. 제2기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출범
- 2020. 02. 25. 2019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21. 02. 26. 2020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21. 08. 10.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 2021. 08. 10.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 2021. 09. 15. 제3기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출범

2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가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 구성·신분 : 2명, 위촉직(민간인)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근무형태 : 주 4일 근무
- 운영방식 : 옴부즈만 독립적 직무수행
- 주요임무
 - 행정기관 등의 행위로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조정·중재
 -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사실 발견 시 해당기관 감사 의뢰
 -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등

나 시민옴부즈만 관할

- 여수시 및 그 소속기관 등
- 여수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 여수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기관

민원처리 예외 대상(시행규칙 제7조)

-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른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관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소개

제3기 (현재)

2021.9.15.
~
2023.9.14.



김기채 | 대표 시민옴부즈만

- 前) 여수시 건설교통국장



김양곤 | 시민옴부즈만

- 前) 현대자동차 여수·순천·광양 지점장
- 前) 여수시 문화해설사(역사·문화)

제2기

2019.8.1.
~
2021.7.31.



임채성 | 대표 시민옴부즈만

- 前) 여수시 해양관광수산국장
- 前) 여수시 과장(노인장애인과, 감사담당관 등)



장애신 | 시민옴부즈만

- 前) 교육지원청 교육장(여수, 곡성)
- 前) 학교장(여수고, 여수여고, 율촌중)

제1기

2017.8.1.
~
2019.7.31.



최봉준 | 대표 시민옴부즈만

- 前) 여수시 국장(기획관광, 경영기획)
- 前) 여수시 감사담당관



곽종철 | 시민옴부즈만

- 前) 여수농협 지점장
- 前) 여수농협 상무(감사, 법무)

3 시민옴부즈만 기능 및 권한

가 주요기능

□ 행정통제 기능

- 옴부즈만은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

□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기능

- 현대사회가 복잡·다양화 되면서 시민과 공공행정 기관간, 이해관계 집단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송 등 전통적 분쟁해결 수단으로는 한계
- 옴부즈만은 행정과 국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조정 역할을 함으로써 사법구제 제도의 한계로 인해 양자간 해결할 수 없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기체로서의 역할을 수행
- 또한, 비용의 부담 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의 기능 수행

□ 행정개혁 기능

- 행정의 속성상 한번 결정되면 그 결정 내용을 선례로 삼아 이를 계속 지속하려는 관성을 깨뜨려 위법·부당한 행정관행을 개선하도록 자극
- 특별한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옴부즈만 특성인 ‘부드러운 법률(soft law)’의 적용을 통해 행정의 변화 도모

□ 민주적·정치적 대변(代辯) 기능

- 계층·부문·지역·집단 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 소수집단, 소외 및 취약계층의 권익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옴부즈만은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

나 시민옴부즈만 직무 및 권한

- 주민들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 여수시장 및 여수시의회가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 기타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시장 및 시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옴부즈만 조치(결정) 유형 |

- **시정권고**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은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정**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합의** :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 **심의안내** :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 **기각**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각하 또는 이첩** : 각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이첩하는 경우

4 고충민원 처리절차

고충민원 신청

- 방문, 전화 등 접수
- 민원 상담 및 분류(처리기한 60일 이내)



운영회의

- 조사여부 결정(각하 등 해당 여부 판단)
- 담당 읍부즈만 지정



조사개시 통보

- 민원인 조사개시 통보
- 해당부서 고충민원 통보 및 자료 요구



조사 실시

- 민원 자료 검토 및 현장 조사
- 해당부서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조사결과 보고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조사결과 통지

- 해당부서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 통보
- 민원인에게 조사결과 통지(3일 이내)



결과 회신

- 읍부즈만 권고사항 조치계획 및 이행결과 회신(30일 이내)

2021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II. 시민옴부즈만 운영성과

1. 고충민원 접수 · 처리 현황
2. 시민옴부즈만 활동
3. 시민옴부즈만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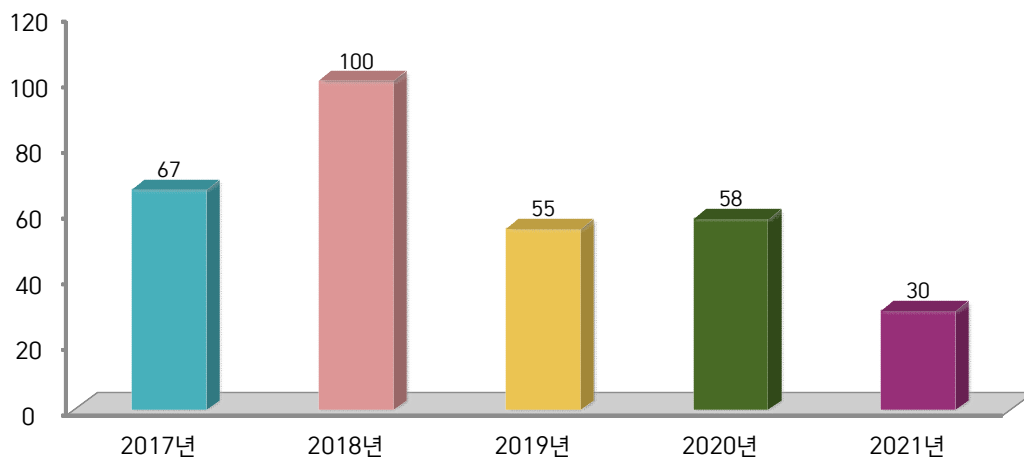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가 총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2017년 8월 1일 출범 이후 2021년 12월 31일에 이르기까지 총 310건의 민원을 조사·처리함

[2017년~2021년 시민옴부즈만 연도별 처리 결과 현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10	67	100	55	58	30



이 중 옴부즈만 직접조사 민원은 100건으로 시정권고 26건, 의견표명 17건, 합의 3건, 심의안내 5건, 기각 38건, 각하 9건, 추진중 2건이며, 종결처리 민원은 210건으로 이첩 50건, 취하 10건, 상담완료 150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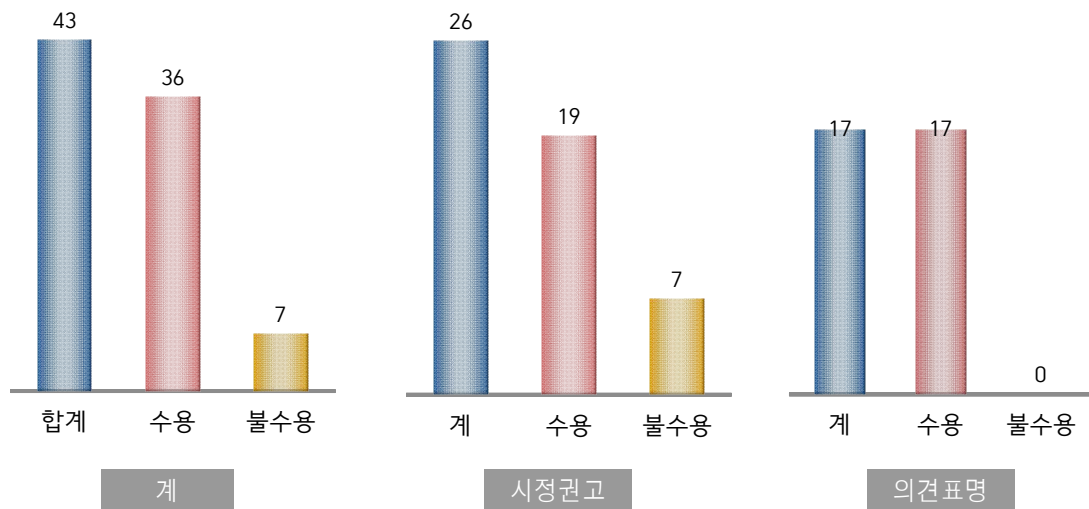
[2017년~2021년 시민옴부즈만 민원 처리 결과 현황]

계	직접 조사(100건)							종결처리(210건)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	심의안내	기각	각하	추진중	이첩	취하	상담완료
310	26	17	3	5	38	9	2	50	10	150

시민옴부즈만에서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한 민원은 총 43건으로, 이 중 피신청인이 수용한 민원은 36건임

[2017년~2021년 시민옴부즈만 처리 결과 수용 현황]

결정사항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계	43	26	17
수용	36	19	17
불수용	7	7	—



옴부즈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총 수용률은 83.7%로, 시정권고 민원은 26건 중 19건이 수용되어 73%의 수용률을, 의견표명 민원은 17건 중 전체 17건 모두 수용되어 100%의 수용률을 기록함

나 2021년 민원접수 내역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2021년 한 해 동안 옴부즈만 직접 조사 민원 10건과 종결 처리 민원 20건을 합하여 총 30건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함

[2021년 시민옴부즈만 민원 처리 결과 현황]

계	직접조사(10건)						종결처리(20건)		
	시정권고	의견표명	심의안내	기각	각하	추진중	이첩	취하	상담완료
30	—	1	—	5	2	2	—	2	18

□ 시민옴부즈만 직접조사 처리 내역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1	이○○	■ 귀농·귀촌 지원금 회수 반려(취소) 신청 – 2019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귀농후 최소 2~3년 동안은 농업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에 대한 부담은 신청인을 대체 소득원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 몰았고, 편법적인 상시근로행위의 확인으로 지원자금 상환과 정착금 회수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으나, 비록 신청인이 관련 법규와 지침, 지원조건 등을 따르지않았다 할지라도 귀농후 최소 2~3년 동안은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 없었다는 점, 가장으로서 배우자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어야한다는 부담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상시근로 행위는 생존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라 아니할 수 없어, 시는 신청인에게 즉각적으로 상환과 정착금 회수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 보다는 지원금 등에 대한 상환과 회수의 유예, 그리고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인이 스스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의견표명 ➔ 2021. 4. 1.(목) 14:00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3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에 따라 여수시 귀농어·귀촌지원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지원금에 대한 한시적 회수 유예 결정(여천농협에 융자금 2021.9. 30.까지 회수 유예 협조)	완료 (의견표명)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2	박○○	■ ○○리 개발위원 임명재고 및 관련조례 개정 요청 - 주민선거를 통한 개발위원 임명은 주민 스스로의 규약을 통해 선거 또는 합의 등의 방식으로 이장의 추천 과정을 거쳐 면장이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조례 개정은 지역마다 특성이 각기 달라 어느 한 지역이 아닌 여수시 전체의 종합적 검토가 있어야 하고, 조례개정 등의 절차가 없더라도 마을총회 등을 통하여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장과 마을주민간의 원만한 합의와 분란해소를 위한 이해와 설득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갈등을 스스로 해소시켜야 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각	완료 (기각)
3	김○○	■ ○○동 산80-3번지 도로 사용 허용 요청 - 개인 사유지에 설치된 펜스로 인한 분쟁은 사인간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규정에 따라 각하함	완료 (각하)
4	이○○	■ 국유재산 매각 관련 재조사 요청 - '79년12월 여천군과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으나 40여년이 지난 현재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납부기일인 1980.1.20.까지 보증금이나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81.11.13. 여천군으로부터 “국유재산 매매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매매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어 기각함	완료 (기각)
5	전○○	■ ○○동 사유지 도로 원상복구 요청 - 신청인의 토지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 인접 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대지로 바뀔으로서 신청인의 사유지 도로 원상복구 요청은 이미 그 목적이 달성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각함	완료 (기각)
6	이○○	■ 사유지의 훼손된 토지 원상복구 요청 - 동일한 사안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판중인 사항으로써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규정에 따라 각하함	완료 (각하)
7	한○○	■ 우기 시 사유지 배수처리에 대한 조치 요청 - 옆집인 ○○업체에서 신청인 소유의 사유지로 빗물이 가지 않게 우수배관의 절단 및 유입우수관이 폐쇄 조치된 상태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함	완료 (기각)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8	정○○	■ ○○동 ☆☆☆ 묘소 토지 소유 공유자 지분 정정 요청 - ○○동 ☆☆☆번지는 매매 원인으로 소유권 일부 이전하여 공유자 지분 설정되었으며, 묘역 외 부분을 5필지로 분할하여 ○○리 ☆☆☆번지 등 2필지는 배후도시 택지 매수대장에 의거 별도 지분매입이 확인되며, △△리 ☆☆☆번지 등 3필지는 보상 관련 자료 부존재로 확인할 수 없어 기각함	완료 (기각)
9	김○○	■ 단전단수 상인 생계대책 호소 - 노숙농성중인 상인들의 생계대책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 요청	추진 중
10	이○○	■ 문서제출 명령신청에 관한 민원 - ○○○○단지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송달하였으나 여수시에서 거부한 정확한 사유와 답변서를 늦게 제출한 사유 요청	추진 중

□ 이첩·취하 민원 내역

연번	민원제목	처리사항	비고
1	시유지 부동산 소유권 반환 요청	취하	
2	건축물대장 지분 정정 요청	취하	

□ 상담완료 민원 내역

연번	민원내용	처리사항
1	○○병원 의료행위 지도·감독 요청 - 욕창 환자 등한시 - 주사 시 혈관 못 찾음	의료행위 지도·감독부서인 보건행정과에 민원내용 전달 및 지도·감독 요청
2	석창 지하차도 내 도로포장 요청	도로시설관리과에 민원내용 전달 및 조치 요청
3	웅천사거리 좌회전 신호가 짧아 차가 밀리니 신호조정 요청	교통과에 민원내용 전달 및 신호조정 요청
4	남도주유소에서 석창으로 나가는 지하차도 내 도로 보수 요청(패임이 심해 통행이 어려움)	도로시설관리과에 민원내용 전달 및 조치 요청

연번	민원내용	처리사항
5	거동 불편한 상황에서 면사무소 인감증명 발급을 받으러 갔는데 본인이 갔음에도 컴퓨터에 서명을 하라 해서 불쾌함	면사무소 인감증명 발급팀장에 민원 내용 전달
6	개인 간 부동산 소유 갈등에 대한 중재 요청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인간의 갈등에 대한 사항은 접수할 수 없음을 안내
7	기초생활수급자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생계 지원 요청	사회복지과 긴급지원팀으로 민원내용 안내 및 조치 요청
8	이사를 와서 쓰레기 배출중 문전수거가 원칙으로 아는데 500여 미터 도로로 가져다 놔라 해서 부당함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에 연락해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
9	옛 철길 조성이 잘되어 있어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에 검색이 되지 않아 불편	공원과에 민원내용 전달 및 조치 요청
10	본인 사유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 본인 소유로 되돌려주기 바람	신속민원팀으로 민원 접수 처리
11	주유소에 탱크로리가 밤낮으로 주차되어 있는데 적법한지 문의	교통과에 민원내용 전달 및 조치 요청
12	본청 청사 북문 옆 굴거리나무가 고사 직전으로 시 자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회계과에 민원내용 전달 및 조치 요청
13	아파트내 주차를 했는데 사전통지없이 독촉장이 나와 언제부터 주·정차 단속을 했는지, 위반 사진이 있으면 보내주라 했는데 답장이 없음	교통과에 민원내용 전달 및 조치 요청
14	향일암 가는길에 우회도로가 있음에도 차량이 마을로 진입하여 노인들이 위험하니 조치바람	교통과에 민원내용 전달 및 조치 요청
15	소호동 동동다리 데크 난간이 흔들려 위험하니 수리 바라고 킥보드를 타고 다녀 보행자와 충돌우려가 있어 금지 안내판 설치 요청	해양항만레저과 민원내용 전달 및 조치 요청
16	개인 사유지를 보상 없이 배수로공사를 하여 기존 구거와 본인 사유지 교환 요청	건설과에 교환이 가능한지 방문하여 상담 안내
17	건축허가를 위한 진입로 확보목적의 사유지 일부 매수 요청	신속민원팀으로 민원 접수 안내
18	백초 하수정말처리장 방류수로 인한 피해보상 요청	민원인이 보상대상자 명단에 들어 있는지 확인 후 접수 안내

2 시민옴부즈만 활동

가 2020년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근 거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
- 시 기 : 2021. 2.
- 대 상 : 여수시장, 여수시의회, 시민
- 방 법 : 공고, 시 홈페이지 게재, 책자 제작(250부) 및 배부

여수시의회 보고(2021. 2. 26.)



나 권역별(전라·제주) 시민옴부즈만 세미나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소개(2021. 10. 15.)



여수시 사례발표(2021. 10. 15.)



다 시민음부즈만 활동 모습

고충민원 현장 방문(2021. 1. 12.)



고충민원 현장 방문(2021. 2. 23.)



I 시민음부즈만 운영 개요

II 시민음부즈만 운영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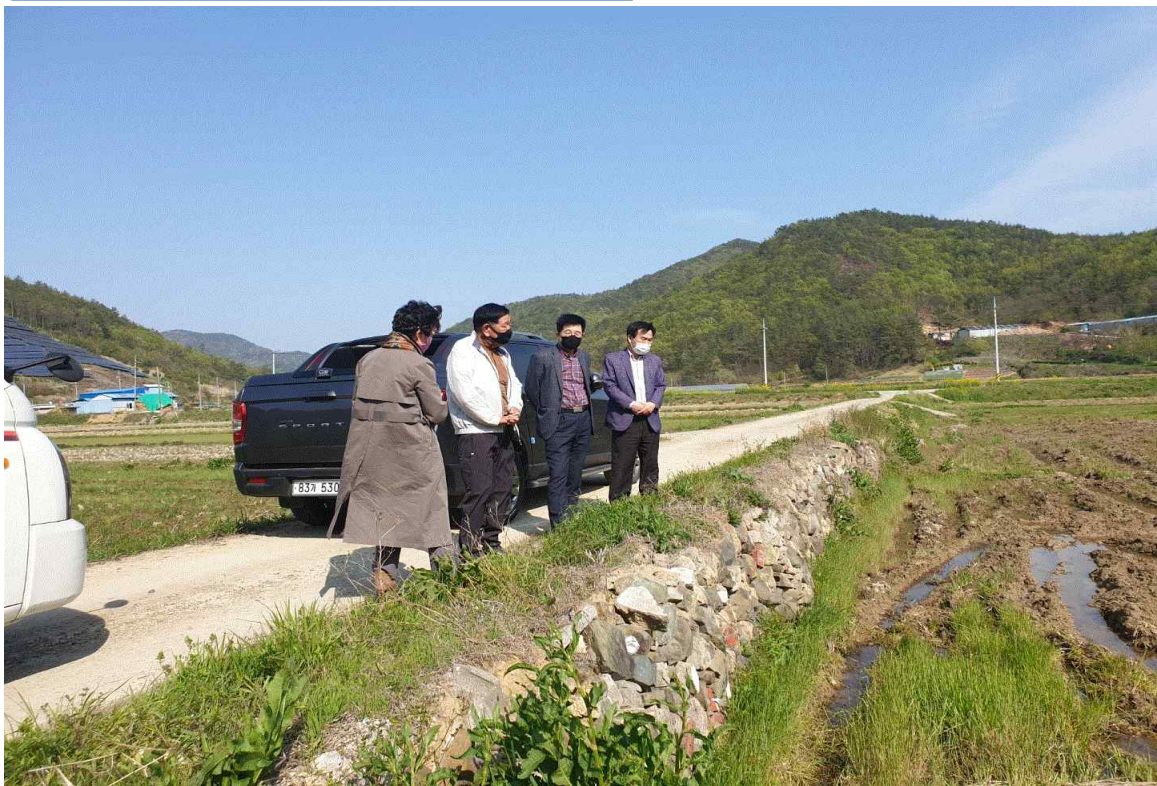
III 주요 처리사례

IV 부록

고충민원 현장 방문(2021. 3. 24.)



고충민원 현장 방문(2021. 4. 7.)



고충민원 현장 방문(2021. 4. 21.)



I 시민오피스만 운영개요

II 시민오피스만 운영성과

고충민원 현장 방문(2021. 7. 14.)



III 주요 처리사례

IV 부록

고충민원 현장 방문(2021. 10. 20.)



고충민원 현장 방문(2021. 11. 3.)



고충민원 관계자 회의(2021. 11. 18.)



I 시민을부지만 운영개요

II 시민을부지만 운영성과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21. 12. 3.)



III 주요 처리사례

IV 부록

3 시민옴부즈만 홍보

가 여수시 홈페이지



나 SNS[여수이야기] 및 배너 홍보

여수시 - 여수이야기
9월 14일 • ●
권익을 침해 당하고 계신가요?
불합리한 행정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 더 보기



다 언론보도



≡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광주 전남 교육 포토·영상

HOME > 전남 > 여수

여수시, 지난해 시민옴부즈만 권고 71% 수용...적극행정 빛나

강경구 기자 | 승인 2021.03.04 14:02 | 댓글 0



| 지난 1년간 고충민원 58건 접수...시정권고 수용률 전년 대비 5% 증가



▲ 여수시가 지난해 시민옴부즈만이 시정 권고한 민원 7건 중 5건을 받아들여 수용률 71%를 기록해 전년 대비 수용률이 5%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시민옴부즈만의 화양면 현장방문 모습)

[현장뉴스 = 강경구 기자] 여수시가 지난해 시민옴부즈만이 시정 권고한 민원 7건 중 5건을 받아들여 수용률 71%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옴부즈만 시정권고 수용률이 전년 대비 5% 증가한 것은 적극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시청 홈페이지에 공표된 2020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1년간 고충민원 58건을 접수했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 분야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 건축 12건, 일반 행정 11건, 환경복지 11건, 상하수도 5건이 뒤를 이었다.

이중 25건은 직접 조사, 4건은 이첩, 1건은 취하, 28건은 상담 완료했다.

직접 조사의 경우 25건 중 7건은 시정 권고했으며 이중 5건이 수용됐고 2건은 처분권한과 법령해석의 이유로 불수용 됐다.

여수시 임채성 시민옴부즈만은 “억울한 시민이 단 한분도 없도록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많은 시민의 방문과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강경구 기자 smilebankkk@naver.com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남 여수시, 제3기 시민옴부즈만에 김기채·김양곤 위촉

2021-09-21 01:36

지난 15일 오전 시청서 위촉식...2년간 주민 권익 보호·구제 활동 수행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15일 오전 시청 시장실에서 김기채(61세, 남), 김양곤(63세, 남) 씨를 제3기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15일 오전 시청 시장실에서 김기채(61세, 남), 김양곤(63세, 남) 씨를 제3기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기채 신임 시민옴부즈만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여수시 건설교통국장을 지낸 행정 전문가로 전문성과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양곤 신임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사회단체 활동 및 여수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한 지역 일꾼으로, 공감·소통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제3기 시민옴부즈만은 교수, 시의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심의와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2년 동안 주민 권익 보호와 구제, 고충민원 조사·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김기채·김양곤 시민옴부즈만은 "무엇보다 시민의 조력자이자 대변자라는 기본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면서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십분 발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시민옴부즈만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여수시청 3층에 있는 시민옴부즈만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여수시 시청로 1), 팩스(061-659-5863), 전화(061-659-3076~78)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의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조사 후 해결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이다.

2021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Ⅲ. 주요 처리사례

1. 의견표명(1건)

2. 기각(5건)

3. 각하(2건)



1 의견표명

귀농·귀촌 지원금 회수 반려(취소) 요청

1 민원개요

- 배우자가 난치병(루프스)을 앓고 있으며, 자연환경에서 치료와 함께 농촌에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을 하게 됨
- 여수시의 지원으로 농지와 주택을 구입하였고, 3년생 블루베리를 식재하였으나 소득창출까지는 앞으로 2~3년이 더 소요되는데 배우자의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상사라는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
- 비록 법을 어기기는 했으나 배우자의 치료비와 생활비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행한 부득이한 행위이므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등 선처 바람

2 사실관계

- 2019년도 2회 차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농지 및 주택구입) 2019. 7. 4.
- 2019년도 3회 차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하우스 신축 등) 2019. 8. 20.
 - 하우스 신축 외 3종
- 귀농인 정착금 지원 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2020. 2. 10.
 - 대상자 : 신청인(월 300천원×12월=360천원)
- 귀농인 정착금 지원 사업 관련 민원현장 확인 2020. 9. 25.
 - 2020. 3월~8월 기간 중 택배업체 (상근)취업 사실 확인

- 귀농지원사업 시행지침 위반에 따른 보조금 회수 및 행정 처분 사전 통지(여수시→신청인) 2020. 9. 28.
- 행정처분 관련 의견 제출에 대한 답변 통보 2020. 10. 15.
- 보조금 회수 및 사후지원 제한조치 예정 통보
- 탄원서 제출(신청인→여수시) 2021. 1. 25.
- 귀농·귀촌지원금 회수에 대한 반려신청
- 탄원서 제출민원 취하 2021. 2. 2.
- 민원신청(신청인→옴부즈만) 2021. 2. 16.

3 판 단

가. 관계법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자리 알선, 창업자금 지원, 주택구입·신축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 (같은 법 제15조)
-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21조의2)
- 귀농 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농어업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귀농어업인의 고충처리 협의 등에 대하여 심의 하는 여수시 ‘귀농어·귀촌지역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4조)

-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귀농어·귀촌 정착을 위한 사업과 주택 관련 지원 사업, 귀농어업 창업 및 주택 구입 등의 지원 사업 등에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0조)
-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등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조례 제13조)

나. 판단내용

- 2019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여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43,636천원을 융자·지원받았고, 2020년 귀농인 정착금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착금 2,100(7개월)천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으며,
- 융자지원금으로 하우스 시설에 블루베리 3년생 200주를 식재 하였으나 소득창출은 식재 후 2~3년이 지나야 가능하고, 별 다른 소득원이 없어 배우자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음
- 이에 신청인은 배우자의 병원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상사에 상시근로(4대 보험 미적용 조건/6개월)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농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의 상근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와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과 여수시 귀농귀촌 지원 사업 시행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 여수시는 절차에 따라 즉각적으로 지원 자금 상환 통지를 하고 동시에 대출취급 기관에 지원 자금 회수통지를 하였으며, 정착금도 회수 조치를 하였음

- 귀농 후 최소 2~3년 동안은 농업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에 대한 부담은 신청인을 대체 소득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 몰았고, 편법적인 상시근로행위의 확인으로 지원 자금 상환과 정착금 회수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음
- 비록 신청인이 관련 법규와 지침, 지원조건 등을 따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귀농 후 최소 2~3년 동안은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 없었다는 점, 가장으로서 배우자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어야한다는 부담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상시근로 행위는 생존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라 아니할 수 없음

4 결 론

- 여수시는 신청인에게 즉각적으로 상환과 정착금 회수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 보다는 지원금 등에 대한 상환과 회수의 유예, 그리고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인이 스스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의견표명 함

5 처리결과 → 수용

◆ 소관부서 : 농촌진흥과

- 2021. 4. 1. 여수시 귀농어·귀촌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지원금에 대한 한시적 회수 유예결정(여천농협에 융자금 2021. 9. 30.까지 회수 유예 협조 요청)

2 기각

○○개발위원 임명 재고 및 관련 조례 개정 요구

1 민원개요

당연직 개발위원을 제외한 이장 추천 개발위원을 해촉하고 주민선거를 통한 개발위원이 임명되도록 여수시의 강력한 행정지도가 요구되며, 「여수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제3조(구성)제1항(위원회 이장의 추천으로~)을 읍·면장이 위촉한 개발위원회 위원은 마을총회 또는 주민추천과 선거를 통해 다수의 추천을 받은 순으로 선출하여 임명 될 수 있도록 개정 요청

2 사실관계

- “주민의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를 하는 마을을 고쳐주십시오” 민원 제기 (오**→국민신문고) 및 회신 2020. 1. 7.
 - 마을규약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관여를 통한 규약 변경은 어려움
- 시·면정 홍보 소홀 및 ○○○○ 업체선정 절차무시 등 관련 이장 해임건의 민원 접수 및 회신 2020. 9. 17.
 - 갈등 조속 해소 권고(면장→이장)
- 코로나 고통분담금 지급 및 마을규약 폐기 관련 민원접수 및 회신 2020. 10. 13.
 - 마을규약 폐기 등은 마을 내부적인 사항이므로 주민총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소해야 함

- 주민화합 저해 ○○리 이장 해임 진정 회신 2020. 10. 21.
 - 주민총회 의결로 해임 요청 시 임명권자(면장)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마을회의 운영 및 마을자금 차등 분배에 따른 적법여부 등 조사요청 2021. 1. 12.
 - 마을자금 분배 관련 사항 등은 주민총회 등을 통해 논의 확인되어야 할 사항임
- 개발위원 임명제고 및 관련 조례개정 요청 민원접수 (신청인 → 옴부즈만실, 신속민원팀) 2021. 3. 5.
- ○○리 이장의 일탈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요청 (송**→여수시) 및 회신 2021. 3. 15.
 - ○○○○업체 계약관련 사항은 마을주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처리해야 함

3 판 단

가. 관련규정

-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하고, 개발위원회의 추천으로 면장의 임명을 받은 자로 하고, 개발위원은 이장의 추천으로 면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리 마을규약 제4조)
- 개발위원은 총 9명(사업 2, 감사 2, 재정 3, 노인복지 1, 자연보호 1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규약 제5조제2항)
- 리·통장은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 리·통의 발전을 위한 제반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 이장·통장은 해당 리·통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주민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 활동력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이장·통장 자격을 제한하고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 읍장·면장·동장이 이장·통장을 해임할 때에는 사망 또는 형사 사건으로 정식 기소된 경우 등으로 해임요건이 매우 제한적이며, 낮은 업무추진능력, 자질부족 등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판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규칙 제6조)
- 주민의 이해조정과 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이장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개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인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수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제2조)

나. 판단내용

- 현 ○○리 개발위원회는 「여수시 리개발위원회 조례」와 「○○리 마을규약」(2019. 3. 11)에 따라 이장의 추천으로 면장이 위촉 (임기 : 2021. 2. 1. ~ 2022. 1. 31.)하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여수시 리개발위원회 조례」에 별도로 개발위원 해촉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이는 자치시대에 걸맞게 마을주민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개발위원 해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 주민선거를 통한 개발위원 임명 요청 또한 주민 스스로의 규약을 통해 선거 또는 합의 등의 방식으로 이장의 추천과정을 거쳐 면장이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신청인이 제기한 ○○리 개발위원 임명’ 관련 조례 개정은 지역(마을)마다 특성이 각기 다르므로 어느 한 지역 (마을)이 아닌 여수시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결 론

◆ 소관부서 : 총무과

- 조례개정 등의 절차가 없다 할지라도 마을총회 등을 통하여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장과 마을주민 간의 원만한 합의와 분란 해소를 위한 이해와 설득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갈등을 스스로 해소시켜야 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리 개발위원 임명 제고 및 관련 조례 개정 요구를 기각함

국유재산 매각관련 재조사 요청

1 민원개요

여수시 ○○면 ○○리 ☆☆☆번지(답 361평 상당)소재 국유지를 1981년 매입대금 일부(2회차)를 납부한 사실 확인과 기 납부한 매입금 반환 및 관련 조치 재조사 요청

2 사실관계

- 매입대금 납부사실 확인 민원 제기(이○○→옴부즈만) 2019. 12. 10.
 - 반복민원 접수 : 자필 탄원서 1부 제출 2021. 3. 22.
 - 민원현장 확인(옴부즈만, ○○면 직원 등 5명) 2021. 4. 7.
- ※ 제출서류

- 여천군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공문(1979. 12. 23.)
: 매각대금 1980. 1. 20.한 납부요구
 ※ 매매계약서
 - 위 치 : ○○면 ○○리 ☆☆☆
 - 면 적 : 361평(답)
 - 매 각 액 : 1,095,500원(보증금 : 120,000원)
 - 납부기일 : 1980. 1. 20.
 - 매 도 자 : 여천군수 · 매 수 자 : 이○○
- 여천군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공문(1981. 11. 13.)
: 매각대금 1981. 11. 23.한 납부요구
- 고지서/영수증 : 지도농협장 발행(단기4294-1961. 12. 1/12. 26.)
- 간이세금계산서 : ○○기업 발행(1978. 2. 13.)

3 판 단

- 대상 토지는 1979. 3. 24.부터 1999. 6. 25. 경지정리 완료 후 폐쇄될 때까지 일관되게 국(재무부) 소유 토지로 관리되어 왔음
- 매매된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중 지도농협에서 발행한 고지서(영수증)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1979. 12.)보다 18년 전(1961. 12.)에 발행된 것이고, 간이세금계산서 또한 매매계약 체결 1년 10개월 전인 1978. 2.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국유재산 매매와는 관련이 없는 서류로 추정됨
- 또한 1979. 12월 여천군과 매매계약을 체결은 하였으나 40여년이 지난 현재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1980. 1. 20. 까지 보증금이나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81. 11. 13. 여천군으로부터 “국유재산 매매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매매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음
- 신청인이 제출한 탄원서는 사인 간의 거래내용이 기록된 것일 뿐이므로 민원 대상 토지에 대한 보증금이나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4 결 론

◆ 소관부서 : 회계과

- 신청인이 요청한 1차 민원에 대한 결과를 바꿀만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반복 제기한 ‘국유재산 매각대금 일부상환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치요청 재조사, 민원은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함

○○동 사유지 도로 원상복구 요청

1 민원개요

○○동 산☆☆☆, △△△번지 사유지 도로 원상복구 요청

2 사실관계

- 둔덕~낙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착공(일부) 1998. 12. 17.
- 둔덕~낙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변경시행 1999. 7. 8.
 - 위 치 : 여수시 ○○동 일원(시도 23호선)
 - 사 업 량 : 연장 1,280m 폭 : 20m
- 둔덕~낙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준공(일부) 1999. 12. 16.
- 여수·여천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900. 1. 5.
 - 사 업 명 : 둔덕~낙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
 - 고 시 : 예향 전남소식 ※ 여수시 고시 제 1999-108호
 - 규 모 : 연장 8,998m 폭 20m
 -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 사업기간 : 1994. 1. 4. ~ 2004. 12. 31.
- ○○동 사유지(도로) 원상복구 요청 민원 제기(신청인→옴부즈만) 2021. 3. 23.
- 민원현장 확인(옴부즈만 등 3) 2021. 4. 21.

3 판 단

가. 관계법령

- 도로의 유지관리는 도로법이나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법 제31조)
-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폐아스콘)를 건설폐기물로 적시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법규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나. 판단내용

- 신청인의 ○○동 토지(산☆☆☆, 산△△△)는 사유지로서 산☆☆☆은 1940년 도로로 지목 변경된 사실이 있고, 산△△△는 1981. 10. 28. 산◇◇◇에서 분할되어 1981. 12. 28. 도로로 지목 변경된 사실이 있으며
- 이후 인접지가 국도 77호선으로 지정(‘일반국도 노선지정령’/2001. 8. 25) 될 때까지 시도로 이용되어 왔음
- 여수·여천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에 따르면 1994. 1. 4. ~ 2004. 12. 31. 기간 중에 둔덕~낙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시행되었고, 신청인의 도로부지는 ‘일반국도 노선지정령’(2001. 8. 25.)에 의해 국도에서 제외되었으며, 둔덕~낙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완공 후 도로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됨

- 현장 확인 결과 신청인의 토지는 도로 기능이 상실됨은 물론 최근 인접 토지(○○동 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스콘 포장은 철거되어 나대지로 바뀌었고, 폐아스콘은 2곳에 나뉘어 적치된 상태임

4 결 론

◆ 소관부서 : 도로시설관리과

- 신청인의 토지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인접 토지(○○동 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대지로 바뀔으로써 신청인의 ‘○○동 산☆☆☆, 산△△△ 사유지 도로 원상복구’ 요청은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각함

우기시 사유지 배수처리에 대한 조치 요청

1 민원개요

여수시 ○○6길 ☆☆ 소재 옆 △△업체에서 설치한 배수로를 사유지로 연결하여 우수 시 민원인 소유 토지 유실 및 석축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배수로 이설 요구

2 사실관계

- 하수관로가 인접 사유지 침범하여 이설 요청 2021. 10. 8.
(신청인 → 신속민원팀)
- 사유지 침범 우수관로 이설조치 하도록 통보 2021. 10. 27.
- 우기 시 사유지 배수 처리에 대한 민원 제기 2021. 10. 28.
(신청인 → 읍부즈만실, 신속민원팀)
- 민원현장 확인(읍부즈만 등 3) 2021. 11. 3.

3 판단 및 결론

◆ 소관부서 : 도시계획과

신청인 소유의 사유 토지로 연결 방류하게 된 배수로는 현지 확인결과 사유지에 설치된 우수배관의 절단 및 배수로 유입구 폐쇄 조치된 상태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함.

○○동 ☆☆☆ 묘소 토지 소유 공유자 지분 정정 요청

1 민원개요

- ○○동 ☆☆☆번지에서 분할된 5필지가 1983년 여천배후도시 택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없어 졌는데 ○○동 ☆☆☆번지 등기부상 공유자 지분은 변동사항이 없는 사유
- 소유자 지분 등기이전 당시 소유자는 사망하였고, 문중과는 어떤 협의도 없었으며 보상금을 받은 상속인도 없는데 어떻게 공유자 지분으로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 요청

2 사실관계

- ○○동 ☆☆☆ 묘역 내 토지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별	지번	지목	지적 (㎡)	묘역 내(㎡)	소유자	구 지적 지번
○○동	○○○	답	63	63	여수시	○○리 ☆☆☆
	○○○	전	20	20	여수시	○○리 ☆☆☆
	○○○	임	5,644	5,644	여수시,○○○	○○리 ☆☆☆
	○○○	전	32	32	여수시	○○리 ☆☆☆
	○○○	전	70	70	여수시	○○리 ☆☆☆
	○○○	전	67	67	여수시	○○리 ☆☆☆
	○○○	전	142	142	여수시	○○리 ☆☆☆
	○○○	도	325	55	국(국토부)	○○리 ☆☆☆
	○○○	전	39	39	여수시	○○리 ☆☆☆
	○○○	전	1	1	여수시	○○리 ☆☆☆
계	10필지		6,403	6,133		

- ○○동 ☆☆☆번지(구, ○○면 ☆☆리 △△△번지)는 1981. 7. 18. ○○○·○○○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으며, 여천군과 ○○○간 매매(1981. 7. 9.)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 일부이전(1981. 7. 18.)하여 공유자 지분 설정됨
- 택지개발사업 전 ○○리 ☆☆☆번지에 대한 여천군 지분(1,538/7,260)은 ◇◇리 ○○○번지 ○○○에게 보상금을 지급(1981. 7. 10.)하고, 여천군으로 공유자 지분등기(1981. 7. 18.)한 후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여천시를 거쳐 여수시로 공유자 지분 소유권 이전되었음
- ○○리 ☆☆☆번지, ◇◇◇번지는 ○○○에게 보상금을 지급(1983. 3. 2.)하고, 여천군으로 소유권 이전(1983. 3. 21.)한 후 여천배후도시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었음
- ○○리 ☆☆☆, ◇◇◇번지는 여천배후도시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었으며, 보상 관련 자료 부존재로 확인할 수 없음
- ○○동 ☆☆☆번지는 ○○○옆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어 ○○○문중에 지분 보상 후 여수시로 소유권 이전(2011. 3. 25.)되었음

3 판 단

- 신청인은 ○○○ 묘역 일부가 여천배후도시 택지조성사업에서 제척되면서 일부 묘역 외 지역은 5필지로 분할되어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없어졌는데, ○○동 ☆☆☆번지(구, ○○면 ☆☆리 △△△번지)는 여수시 공유자 지분은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여수시 지분 말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 피신청인은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1981. 7. 9.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지분으로 설정되었으며, 관계부서 및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 관련 자료를 확인 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자료 부존재로 확인이 어렵다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나
- 일부 자료가 확인된 배후도시 용지 매수대장 확인 결과 택지 개발사업 전 ○○리 ☆☆☆번지에 대한 여천군 지분(1,538/7,260)은 ○○리 ☆☆☆번지 ○○○에게 보상금을 지급(1981. 7. 10.)하고, 여천군으로 공유자 지분등기(1981. 7. 18.)하였으며
- ○○리 ☆☆☆번지, △△△번지는 ○○○에게 보상금을 지급(1983. 3. 2.) 하고, 여천군으로 소유권 이전(1983. 3. 21.)한 후 여천배후도시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었음
- ○○리 ☆☆☆, △△△, ◇◇◇번지는 여천배후도시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었으며, 관련 자료 부존재로 확인할 수 없음

4 결 론

◆ 소관부서 : 공원과, 공영개발과, 회계과

- 신청인의 등기부상 공유자 지분 정정 요구는 일부 보상 관련자료 부존재로 확인할 수 없어 기각함

3

각하

○○동 산☆☆번지 도로사용 허용 요청

1

민원개요

국유지 도로를 활성화 하여 사업상 도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전에는 대형차가 통행을 하였는데 현재 펜스 설치로 인하여 통행을 할 수 없어 사업상 피해를 보고 있으니 조치 요청

2

판단 및 결론

◆ 소관부서 : 건설과, 도로시설관리과

상기 민원은 개인 사유지 펜스 설치로 인한 분쟁은 사인 간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7조(고충민원의 각하 등)에 따라 각하 결정함

사유지의 훼손된 토지 원상복구 요청

1 민원개요

○○동 ☆☆☆번지 외 2필지의 지목은 도로이나 개인 진입로로 활용을 위해 훼손한 토지의 원상복구 요청 및 ○○동 ☆☆☆번지 외 1필지의 지하에 토지사용승락서 없이 설치한 개인 불법 배수로 철거 요청

2 판단 및 결론

◆ 소관부서 : 허가민원과, 도시계획과

상기 민원은 동일한 사안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판중인 사항으로써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고충민원의 각하 등)에 따라 각하 결정함

2021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Ⅳ. 부록

1.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등(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의 “소속기관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5. “사무국”이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6.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 기능 · 구성 등

제3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기 관할을 정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권익 보호 · 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 · 처리
 2.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옴부즈만에게 위임 ·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 처리
 3.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4.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 · 외 기구 · 기관들과의 교류 · 협력
 5. 기타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구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옴부즈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옴부즈만이 궐위된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대표옴부즈만) ①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 대표옴부즈만과 부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 ②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옴부즈만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할) 옴부즈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등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9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권익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11조(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 스스로 제1항 또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1. 옴부즈만(또는 고충민원) 담당국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
2.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3.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전국교수협회의 추천 또는 지역 대학의 총장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4. 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옴부즈만 대상자를 복수 추천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의회 동의) ① 시장은 읍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읍부즈만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의회에 위촉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읍부즈만으로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확정한다.

제14조(자문기구) ① 읍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읍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등

제16조(사무국) ① 시장은 읍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대표읍부즈만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③ 읍부즈만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파견 또는 채용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사·처우 등과 관련한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읍부즈만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서 등에는 ·여수시 공인 조례·를 준용하여 별도의 공인을 각인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옴부즈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부칙(2016. 12. 30.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8. 10.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제3조(의뢰 또는 요청에 의한 조사)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고충민원, 다수인관련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조사를 위임·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의뢰받은 사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 및 의회에 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과 타 기관의 옴부즈만에게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기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고충민원의 이첩)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시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옴부즈만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른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관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6.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8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고충민원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옴부즈만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옴부즈만의 기피·회피) ① 이해당사자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옴부즈만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옴부즈만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옴부즈만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옴부즈만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또는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시 및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시 및 그 소속기관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만 및 사무국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합의의 권고) ① 읍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의 권고할 수 있다.

② 읍부즈만은 합의의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회의는 읍부즈만이 주재한다.

③ 읍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관계 소속기관등의 관계부서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합의의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조정회의 참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읍부즈만이 이를 확인한다. 이 경우 신청인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따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의 진행) ① 대표읍부즈만은 필요한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른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하며,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간사의 사무는 파견 공무원이 수행한다.

③ 의안의 제안 설명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처리에 참여한 읍부즈만이 한다.

④ 읍부즈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한 읍부즈만은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⑥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한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심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서의 경정) ① 읍부즈만은 제14조제6항에 따른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의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의 처리결과 통보 기한 등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1. 관련 법령·제도·시책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의 처리결과 통보 기한 등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권고, 의견표명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9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옴부즈만으로부터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 ③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및 고충민원의 처리·각하·이첩·종결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①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1조(감사의 의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 감사담당 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자문기구)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선정, 위촉,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읍부즈만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참석을 요구한 경우 해당 자문위원은 자문회의에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2. 그 밖에 읍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⑥ 자문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자문위원이 자문회의에 참석한 경우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파견을 요청받은 경우 고충민원의 처리에 적합한 공무원 또는 직원을 선발하여 파견한다.

② 시장은 파견 후 복귀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희망부서 전보, 근무평정 등 인사 우대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활동 수당 지원) ① 읍부즈만의 업무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활동 수당은 5급 공무원(15호봉) 봉급의 50퍼센트 상당 수준으로 하며, 근무 조건 및 수당 지급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읍부즈만에게 제1항에 따른 활동 수당 외에 민원현장 확인·조사 등에 따른 여비를 공무원 여비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조례 제18조에 따른 읍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읍부즈만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읍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4. 그 밖에 읍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기록의 관리) ① 옴부즈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7. 4. 7. 규칙 제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10. 규칙 제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MEMO

MEMO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3층 시민옴부즈만실]

Tel. 061-659-3075~3078

Fax. 061-659-5863